

부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1997. 11. 24.

나. 제안자 : 부천시장

다. 회부일자 : 1997. 11. 24.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제57회 부천시의회(정기회) 제9차 건설교통위원회(97. 12. 16.) 상정, 질의, 토론

○ 제57회 부천시의회(정기회) 제10차 건설교통위원회(97. 12. 17.) 의결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 상수도사업소장 이정환)

가. 제안이유

정액제로 징수되는 현행의 급수공사비가 실제보다 과다징수되는 사항이 경기도 양주군에 대한 감사원 감사시 지적됨에 따라 경기도지사로부터 급수공사를 실공사거리(실거리제)로 산정토록 관련조례 개정 요구가 있어 이를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급수공사 시행시 정액제로 시행되고 있는 기본거리 20미터를 실제 소요되는 거리로 설계하여 급수공사비를 징수

○ 제수수료(설계, 시공자제검사 준공검사)가 이원화(40밀리미터 미만 및 이상)되어 있는 것을 일원화

3.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4. 토론요지

가. 찬성토론

○ 없음

나. 반대토론

○ 없음

5. 심사결과

○ 원안가결

6. 소수의견요지

○ 없음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부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34호
의결년월일	97. 12. 20. (제57회)

제출년월일 : 97. 11. 24.

제 출 자 : 부천시장

□ 제안이유

정액제로 징수되는 현행의 급수공사비가 실제보다 과다징수되는 사항이 경기도 양주군에 대한 감사원 감사시 지적됨에 따라 경기도지사로부터 급수공사를 실공사거리(실거리제)로 산정토록 관련조례 개정 요구가 있어 이를 개정코자 함

□ 주요골자

- 가. 급수공사 시행시 정액제로 시행되고 있는 기본거리 20미터를 실제 소요되는 거리로 설계하여 급수공사비율 징수(안 제10조)
- 나. 제수수료(설계, 시공자제검사, 준공검사)가 이원화(40밀리미터 미만 및 이상) 되어 있는 것을 일원화(안 제36조)

□ 관계법령 발췌서

○ 제수수료 공사비 비교표

부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부천시수도급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및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급수공사 신청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에 있어 급수장치를 수선 또는 철거하고자 할 때를 제외하고는 설계수수료(현장측량, 수리계산수수료 등)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설계수수료는 선납하여야 하며 이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단, 가정용 이외의 계량기 구경 100미터미터 이상 단일건물의 급수공사는 설계금액 확정 후 납부하여야 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공사비의 산출) ①급수공사비는 실공사거리(실거리제)로 산정한다.

②급수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도로복구비, 준공검사수수료, 시공자재검사수수료 및 설계수수료의 합계액으로 하며, 지정된 공사비 이외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실비를 가산한다.

제11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4항을 삭제한다.

③선납된 공사비는 공사준공 후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에 관하여는 부천시급수공사업무처리규정에 의한다. 단, 대행업자의 시공비 정산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6조 본문 및 동조제1호 내지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6조(제수수료) 시장은 급수공사 신청 및 승인이 있을 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징수한다.

1. 제6조제2항의 설계수수료 : 수용가세대당 4,000원. 다만, 가정용 이외의 계량기 구경 100미터미터 이상 단일건물 급수공사의 경우에는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여진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중 건설부문의 기본설계요율을 적용한다.
2. 제7조제2항의 시공자재검사수수료 : 4,000원
3. 제7조제2항의 준공검사수수료 : 4,000원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이미 접수되었거나 처리중인 시행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6조(급수공사의 승인) ①(생략) ②제1항의 신청에 있어 급수공사 신청인이 설계수수료(현장측량, 수리계산수수료 등)를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급수장치를 수선 또는 철거하고자 할 때에는 설계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며 정액제에 따를 수 없는 공사의 설계수수료는 설계금액 확정 후 납부한다. ③제2항에 의하여 선납된 설계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④(생략) 제10조(공사비의 산출방법) ①급수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도로복구비, 준공검사수수료, 시공자재검사수수료 및 설계수수료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전항에 지정된 공사비 이외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실비를 가산한다. ③급수공사비는 정액제로 하며, 그 금액은 시장이 별도로 고시한다. 다만, 정액제에 따를 수 없는 공사비는 별도의 설계에 의하여 산정한다.	제6조(급수공사의 승인) ①(현행과 같음) ②급수공사 신청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에 있어 급수장치를 수선 또는 철거하고자 할 때를 제외하고는 설계수수료(현장측량, 수리계산수수료 등)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설계수수료는 선납하여야 하며 이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단, 가정용 이외의 계량기 구경 100밀리미터 이상 단일건물의 급수공사는 설계금액 확정 후 납부하여야 한다. ④(현행과 같음) 제10조(공사비의 산출) ①급수공사비는 실공사거리(실거리제)로 산정한다. ②급수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도로복구비, 준공검사수수료, 시공자재검사수수료 및 설계수수료의 합계액으로 하며, 지정된 공사비 이외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실비를 가산한다.

현행	개정안
제11조(공사의 선납) ①~②(생략) ③선납된 공사비는 공사준공 후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 후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이를 환부 또는 추징한다. 다만, 공사비를 정액제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공사비를 정액제로 하는 경우에는 준공 후 급수신청자에게 정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시장은 대행업자에게 시공비를 정산하여야 한다. 제36조(제수수료)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각각 해당되는 수수료를 징수한다. 1. 제6조 제2항의 설계수수료 가. 급수관구경 40m/m 미만 4,000원 나. 급수관구경 40m/m 이상 6,000원 다만, 정액제에 따를 수 없는 공사의 설계수수료는 설계금액 100분의 2로 하며, 급수관 구경 40m/m 미만 공사에 해당하 는 금액을 하한선으로 한다. 2. 제7조제2항의 시공자재검사수수료 가. 급수관구경 40m/m 미만 3,000원 나. 급수관구경 40m/m 이상 6,000원 3. 제7조제2항의 준공검사수수료 가. 급수관구경 40m/m 미만 3,000원 나. 급수관구경 40m/m 이상 6,000원 4.~5. (생략)	제11조(공사의 선납) ①~②(현행과 같음) ③선납된 공사비는 공사준공 후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에 관하여는 부천시급수공사업무처리규정에 의한다. 단, 대행업자의 시공비 정산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삭제) 제36조(제수수료) 시장은 급수공사 신청 및 승인이 있을 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징수한다. 1. 제6조제2항의 설계수수료 : 수용가 세대당 4,000원. 다만, 가정용 이외의 계량기 구경 100밀리미터 이상 단일건물 급수공사의 경우에는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여진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중 건설부문의 기본설계요율을 적용한다. 2. 제7조제2항의 시공자재검사수수료 : 4,000원 3. 제7조제2항의 준공검사수수료 : 4,000원 4.~5. (현행과 같음)

제 수 수 료 비 교

구 분		종 전			개 정 후			증 감		
		건수	단가	금 액	건수	단가	금 액	차 액	증	감
계				12,610,000			13,836,000	증 1,226,000	2,036,000	810,000
설계	소계			4,882,000			4,612,000	감 270,000		270,000
	25이하	1,018	4,000	4,072,000	1,018	4,000	4,072,000			
	40이상	135	6,000	810,000	135	4,000	540,000			270,000
시공 자재	소계			3,864,000			4,612,000	증 748,000	1,018,000	270,000
	25이하	1,018	3,000	3,054,000	1,018	4,000	4,072,000		1,018,000	
	40이상	135	6,000	810,000	135	4,000	540,000			270,000
준공 검사	소계			3,864,000			4,612,000	증 748,000	1,018,000	270,000
	25이하	1,018	3,000	3,054,000	1,018	4,000	4,072,000		1,018,000	
	40이상	135	6,000	810,000	135	4,000	540,000			270,000

공 사 비 비 교

구 분	종 전	개 정 후	증 감	비 고
계	564,662,000	189,802,000	감 374,860,000	계량기, 보호통, 시설 분담금은 동일하므로 제외시켰음
13m/m	222,462,200	60,310,000	감 162,152,000	
20m/m	191,182,800	64,746,000	감 126,436,800	
25m/m	151,017,000	64,746,000	감 86,271,000	

총액비교 : 감 374,860,000 - 증 1,226,000 = 감 373,634,000원

정액제금액 : 건수 × (정액공사비 - 계량기, 보호통, 시설분담금)

0.13mm : 공사비 (562,000 + 분담금 (120,000)) = 682,000원

$682,000 \times 442\text{건} (301,444,000) - 78,981,800 = 222,462,200\text{원}$

(78,981,800 = 178,692원 × 442건 : 계량기, 보호통, 시설분담금)

0.20mm : 공사비 (651,000) + 분담금 (225,000) = 876,000원

$876,000 \times 345\text{건} (302,220,000) - 111,037,200 = 191,182,800\text{원}$

0.25mm : 공사비 (755,000) + 분담금 (375,000) = 1,130,000

$1,130,000 \times 231\text{건} (261,030,000) - 110,013,000 = 151,017,000\text{원}$

실거리제 공사비

0.13mm : $18,500 \times 3,260\text{m} = 60,310,000\text{원} (442\text{건})$

0.20mm : $19,800 \times 3,270\text{m} = 64,746,000\text{원} (345\text{건})$

0.25mm : $19,800 \times 3,270\text{m} = 64,746,000\text{원} (231\text{건})$

시설분담금 비교표

구분	서 울	인 천	성 남	의정부	파 주	부 천	비 고
13	185,000	180,000	94,000	120,000	12,000	120,000	
20	538,000	490,000	254,000	200,000	210,000	225,000	
25	960,000	880,000	451,000	300,000	388,000	375,000	
32	1,980,000	—	—	—	—	—	
40	3,230,000	2,700,000	1,380,000	600,000	776,000	1,200,000	
50	4,660,000	4,300,000	2,200,000	1,200,000	1,814,000	3,000,000	
75	9,680,000	8,900,000	4,560,000	2,400,000	3,240,000	6,000,000	
100	16,500,000	15,200,000	7,790,000	4,200,000	6,026,000	11,850,000	
150	35,900,000	33,200,000	16,950,000	8,400,000	12,052,000	24,000,000	
200	51,000,000	47,100,000	24,080,000	18,000,000	20,250,000	37,500,000	
250	68,900,000	63,600,000	32,510,000	—	—	49,350,000	
	면적별 정액제	구경별 정액제	실거리제	실거리제	실거리제	20m 정액제	

시설분담금 비교표

구분	인 천	성 남	의정부	파 주	부 천	비 고
13	180,000	94,000	120,000	120,000	120,000	
20	490,000	254,000	200,000	210,000	225,000	
25	880,000	451,000	300,000	388,000	375,000	
32	--	--	--	--	--	
40	2,700,000	1,380,000	600,000	776,000	1,200,000	
50	4,300,000	2,200,000	1,200,000	1,814,000	3,000,000	
75	8,900,000	4,560,000	2,400,000	3,240,000	6,000,000	
100	15,200,000	7,790,000	4,200,000	6,026,000	11,850,000	
150	33,200,000	16,950,000	8,400,000	12,052,000	24,000,000	
200	47,100,000	24,080,000	18,000,000	20,250,000	37,500,000	
250	63,600,000	32,510,000	--	--	49,350,000	
	구경별 정액제	실거리제	실거리제	실거리제	20m 정액제	

제수수료 비교표

구 분		인 천	성 남	의정부	파 주	부 천
설 계	25mm 이하	3,000	공사비의	2,000	2,000	4,000
	40mm 이상	6,000	1%	4,000	4,000	
준공검사	25mm 이하	3,000	공사비의	2,000	2,000	4,000
	40mm 이상	6,000	1%	4,000	4,000	
시공자재 검 사	25mm 이하	3,000	공사비의	2,000	2,000	4,000
	40mm 이상	6,000	1%	4,000	4,000	